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(안 제4조의2제2항제4호)
- 나.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'기부채납일'이 아닌 '사용허가를 받은 날'로 개정함 (안 제1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 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4. 5. 30. ~ 6. 19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재무국 재산관리과 김명희 (☎ 2133-3280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각 호”를 “각 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용도이외”를 “용도 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전임강사”를 “조교수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정을 요하는”을 “시정이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,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호 중 “서울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2호 중 “서울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25조제5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26조제3항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서울시”를 “시”로,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서울특별시의”를 “시의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감면”을 각각 “감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감면 : 학생수”를 각각 “감경 : 학생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내에서 감면”을 “범위에서 감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서울특별시의”를 “시의”로, “범위 내에서 감경”을 “범위에서 감면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금고은행”을 “시 금고(「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금고)를 말한다. 이하 같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제2호 전단 중 “시금고”를 “시 금고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각각 “시”로 한다.

제38조제1호, 같은 조 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5호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각각 “시”로 한다.

제39조의2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」”를 “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되며”를 “맡고”로, “위촉하되”를 “임명 또는 위촉하되”로, “과반수이상”을 “과반수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주사가 된다”를 “주무관이 맡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위원과반수”를 “재적위원 과반수”로 한다.

제39조의3제2호 중 “치료를 요하는”을 “치료가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0조 단서 중 “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로 한다.

제52조 중 “사용대상 공무원”을 “사용자”로 한다.

제7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긴급처분을 요하는”을 “긴급처분이 필요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수선을 요하는”을 “수선이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각각 “시”로 한다.

7.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

제72조제1항제1호 중 “요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

현 행	개 정 안
<p><u>를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</u></p> <p>제7조(실태조사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<u>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제16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<u>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,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8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)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</p>	<p>제7조(실태조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시정이 필요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무상사용기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</p> <p>제18조의2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다른 국제기구가 <u>서울시</u> 내의 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</p>	<p>----- <u>서울특별시</u> (이하 “시”라 한다) ----- -----</p>
<p>2.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<u>서울시</u> 내의 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</p>	<p>2.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5조(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·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서울특별시</u>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25조(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시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서울특별시</u>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</p>	<p>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따라 지정·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5 이상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·운영자가 사용하거나 <u>서울특별시</u>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·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가</u>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단체·법인·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</p>	<p>----- -----</p>
<p>5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또는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 중소기업 창업·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<u>서울특별시</u>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</p>	<p>5. -----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6. <u>서울시가</u>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<u>서울특별시</u>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</p>	<p>6. <u>시가</u>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7. <u>서울특별시의</u>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·사용하는 경우</p>	<p>7. <u>시의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8. ~ 14. (생략) ⑥·⑦ (생략)</p>	<p>8. ~ 14. (현행과 같음) ⑥·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</p>	<p>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<u>감면</u>할 수 있다.</p> <p>가. ~ 바. (생략)</p> <p>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<u>감면</u>할 수 있다.</p> <p>가. ~ 사. (생략)</p> <p>②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75퍼센트 <u>감면</u> :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</p> <p>3. 50퍼센트 <u>감면</u> :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p>	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감경</u>-----.</p> <p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감경</u>-----.</p> <p>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감경</u> : 학생수----- ----- -----</p> <p>3. ----- <u>감경</u> : 학생수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해당하는 생산·연구시설에 대하여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범위 에서 감면-----.</p>
<p>1.·2. (생략)</p>	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⑥ 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<u>서울특별시의</u>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⑥ ----- ----- ----- <u>시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범위에서 감면-----.</p>
<p>제31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</p>	<p>제31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</p>
<p>①·② (생략)</p>	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<u>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</u>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.</p>	<p>③ ----- --- <u>시 금고(「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
<p>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</p>	<p>④ -----</p>



현행	개정안
<p>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3.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,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, <u>서울특별시</u>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p>	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5.·6. (생략)</p>	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
<p>7. <u>서울특별시</u>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</p>	<p>7. <u>시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

현행	개정안
<p>8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<u>서울특별시</u> 소유가 아닌 건물(단, 「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.)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특별시·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, 시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, 광역시·시·군의 읍·면지역에서는 1,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)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p> <p>2·3. (생략)</p> <p>4.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·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,000제곱미터 이하, 그 밖의 지역에</p>	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</p>



현행	개정안
<p>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. 다만 <u>서울특별시</u>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6. ~ 10. (생략)</p> <p>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「<u>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</u>」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<u>위촉</u>하되,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<u>과반수</u>이상 되도록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 및 서기는 재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<u>주사가</u></p>	<p>----- ----- ---. 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6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말고</u>----- ----- <u>임명</u> 또는 <u>위촉</u>하되----- <u>과반수</u>가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무관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된다.</u></p> <p>⑦ 심사위원회는 <u>위원과반수의</u>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⑧ (생략)</p> <p>제39조의3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장기 <u>치료를 요하는</u>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제47조(종합청사화의 도모)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<u>범위 안에서</u>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0조(사용허가)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. 다만, 1급·2급 관사의 사용은 <u>허가를 요</u></p>	<p><u>이 맞는다.</u></p> <p>⑦ ----- <u>재적위원 과반수</u>----- -----.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9조의3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 <u>치료가 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7조(종합청사화의 도모) ① 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0조(사용허가) ----- ----- -----.</p> <p>----- <u>그러하지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52조(관사 관리대장의 비치)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<u>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</u>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한다.</p> <p>제71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·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u>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합이 비경제적인 물품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p>	<p><u>아니하다.</u></p> <p>제52조(관사 관리대장의 비치) -- ----- ----- <u>사용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1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</u>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물품의 성질상 <u>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수선을 요하는 물품</u>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<u>서울특별시</u> 소속행정기관,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, 광역시, 도에 대하여 행한다. 다만,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<u>서울특별시</u> 소속행정기관,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.</p> <p>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<u>서울특별시</u>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72조(불용품의 매각) ① 제71조</p>	<p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긴급처분이 필요한</u>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수선이 필요한</u> ----- 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2조(불용품의 매각) ①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.</p> <p>1. 매각대금이 매각에 <u>요하는</u>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② ~ ⑧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 <u>필요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### 4. 작성자

- 재무국 재산관리과 김명희 주무관(2133-3280)